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출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개발·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을 얻지 않고 생산·개발·보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조제4항 및 제62조제5항제8호).

II. 검토의견

1. 방산물자 폐기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 근거 마련 등(안 제41조제3항·제4항 등)

- 안 제41조제3항은 방산업체가 수출의 홍보 또는 국방연구 개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한 방산물자를 보유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보유한 방산물자를 폐기하는 경우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채, 제41조제4항에서 보유 중인 방산물자의 관리 및 폐기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의 경우 폐기 과정에서 기술유출의 우려 등이 있으므로 하위법령에서 폐기의 경우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예정이라고 함.

- 방산업체가 수출의 홍보용 등으로 생산한 방산물자를 보유한 후 폐기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방산업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인데, 이에 대한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게 될 경우 비록 보유 중인 방산물자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도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 유보 원칙¹⁾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41조제4항은 폐기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방산물자 폐기의 주체는 방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다양한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처분²⁾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방산물자 폐기 등 처분의 주체가 방위사업청장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법률 해석상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안 제41조제3항의 방위사업청장 승인 대상에 ‘방산물자를 폐기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안 제41조제4항에서 ‘폐기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하며, 안

1)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기본권 제한을 해제하는 요건·기준·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28.

2)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41조제3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별칙규정인 안 제62조제5항 제8호에 ‘방산물자를 폐기한 자’를 추가하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마련함.

<안 제41조의제3항·제4항 및 제62조제5항제8호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1조(방위산업지원) ③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자신의 부담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하여 이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방위산업지원) ③ ----- <u>수출의 홍보</u> ----- ----- ----- <u>보유·폐기하고자</u> -----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요건과 절차, 보유 중인 방산물자의 관리 및 폐기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 ----- <u>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u> -----.
제62조(벌칙)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벌칙) ⑤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하여 <u>보유한 자</u>	8. ----- ----- ----- <u>보유·폐기한 자</u>

- 그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김성완)